

전주지방법원 2021. 10. 8 선고 2021가단4002 판결 [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확인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

담당변호사 우승원, 진현덕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

변 론 종 결 2021. 9. 17.

판 결 선 고 2021. 10. 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2.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2,07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12. 1.부터 2021. 1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,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제2항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(이하 '피고 C'라 함)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유치권자임을 확인한다(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

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.

확인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, 이에 따라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(대법원 2020.

1. 16.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,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은 유치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.

2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B'이라 함)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

가. 청구의 표시

원고가 2020. 5. 25.경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은 후 2020. 11. 30.경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, 피고 B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2,070,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공사대금청구권.

나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

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치봉

별지